

법령Ⅱ -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

비상대비자원 관리법(시행령 포함)

문 1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‘비상사태’란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를 말한다.
- ② ‘과학기술자’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,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- ③ ‘기본지침’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작성하는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.
- ④ ‘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’이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

문 2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인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② 담배의 수출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물적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③ 비상대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.
- ④ 비상대비자원 중 중점관리대상인력을 지정할 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지정한다.

문 3.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.
- ② 집행계획은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고 국무총리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된다.
- ③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시·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.
- ④ 실시계획은 시·도지사로부터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고 주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확정된다.

문 4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주무부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을 받은 인력자원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술인력의 양성을 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주무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③ 주무부장이 중점관리대상물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물자에 지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.
- ④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문 5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.
-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업체의 장에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,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.

문 6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주무부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6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주무부장이 정부비축 물자에 대하여 비축을 해제하거나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은 비축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·점검할 수 있으며, 확인·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.
- ④ 주무부장은 비축물자의 품목·규격·수량·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문 10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의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2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주무부장관이 그 훈련의 방법·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.
- ② 2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.
- ④ 동시관리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.

문 11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통지서의 발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동시관리훈련의 경우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 훈련통지서를 발급하여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한꺼번에 교부하여야 한다.
- ②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의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 주무부장관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그의 가족에게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하고, 통지서의 수령을 거절한 가족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- ③ 훈련통지서의 교부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지만,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.
- ④ 인력훈련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시·도지사등이 훈련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, 훈련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.

문 12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 출석 등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②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·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훈련대상물자가 부동산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용기관의 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그 물자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문 13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하여 보상한다.
- ②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한다.
- ③ 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훈련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숙박료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, 동시관리훈련인 경우에는 숙박료·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청구권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
민방위기본법(시행령 포함)

문 14.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분과위원회인 재난구호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.
- ㄴ. 인사혁신처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이 아니다.
- ㄷ. 병무청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이다.
- ㄹ.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간사가 된다.
- ㅁ.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① ㄱ
- ② ㄱ, ㄴ, ㄷ
- ③ ㄴ, ㄷ, ㄹ
- ④ ㄱ, ㄴ, ㄷ, ㄹ, ㅁ

문 15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, 집행 계획, 시·도계획과 시·군·구 계획, 읍·면·동 계획으로 나뉜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기본 계획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작성한다.
- ④ 기본 계획에는 기본 계획의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.

문 16. 민방위기본법령상 집행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㉠ ~ ㉤에 들어갈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(㉠)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.
-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(㉡)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.
-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·도 계획을 매년 (㉢)까지 확정하여야 한다.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연도 시·군·구 계획을 매년 (㉣)까지 확정하여야 한다.

	㉠	㉡	㉢	㉣
① 9월 말	10월 10일	10월 말	11월 말	
② 9월 말	10월 말	11월 10일	12월 말	
③ 10월 말	11월 10일	11월 말	12월 말	
④ 10월 말	11월 말	12월 10일	12월 말	

문 20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요원이 아닌 통·리 민방위 대원 甲의 교육훈련 및 그 유예·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甲은 연 10일,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, 필요에 따라 甲의 교육 및 훈련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.
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甲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두어야 한다.
- ③ 甲이 관혼상제를 이유로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는 경우 교육훈련 소집일 1일 전까지 그 사유를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직접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④ 甲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어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경우 형의 집행종료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
문 21. 민방위기본법령상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동원을 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체 없이 시·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읍·면·동장은 민방위사태 발생이 우려되어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정이 있으면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에는 동원의 시기·지역·대상·사유·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동원 대상 민방위 대원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고,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·군·구 및 읍·면·동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,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하나,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읍·면·동장은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.

문 22. 민방위기본법령상 응급조치와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철도·궤도·차량이나 그 밖의 교통 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·물건이나 사업의 관리자·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시설 등의 개선·이전·분산·소개(疏開) 또는 전환 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미리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주민 2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.
- ③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·지역·기간·방법·사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,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보상을 요하는 응급조치를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일부터 30일 내에 손실보상 청구자와 보상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

문 23. 민방위기본법령상 등화관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민방위 훈련을 할 때에는 적기(敵機)의 야간공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적기가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빛을 내는 설비·장비 및 그 밖의 물체(야광도료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차광 등의 방법으로 각종 불빛을 통제할 수 있다.
- ㄴ.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「민방위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 중 일반 옥외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하여 공습관제 요령에 따라 등화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지정 등화관제를 실시할 때에는 대상 등화의 종류와 실시 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- ㄷ. 등화관제는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사이에 실시하되, 건축물·차량·선박·항공기 및 지하 시설 등의 내부 등화로서 외부에 빛이 새 나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ㄹ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민방위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화염류로서 그 화염류의 빛을 관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, 그 관제를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하여는 경계관제 또는 공습관제 시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와 그 은폐 정도를 지정할 수 있다.

- ① ㄴ
- ② ㄱ, ㄴ
- ③ ㄴ, ㄷ
- ④ ㄷ, ㄹ

문 24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민방위 경보의 신호 방법과 전달 요령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의 경우 홍수통제소장은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- ④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,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.

문 25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및 대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민방위 대원은 교육훈련 중이나 임무 수행 중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방위 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(標識章)을 달아야 한다.
- ㄴ. 민방위대는 민방위대를 나타내기 위하여 민방위대기(民防衛隊旗)를 가질 수 있으며, 민방위대기의 제식(制式)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ㄷ. 민방위대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.
- ㄹ.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여야 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ㄴ, ㄷ
- ③ ㄴ, ㄹ
- ④ ㄷ, ㄹ

예비군법(시행령 포함)

문 26.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최종 선발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가 된 대한민국 국민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지원하여 직장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그 직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때에 종료된다.
- ③ 「병역법」상 현역병 중 전상·공상·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자는 예비군 조직에 포함된다.
- ④ 지역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해당 거주지 관할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문 27.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「통합방위법」상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우에는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포함하여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이라도 직장예비군을 편성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지역예비군 중대는 동·읍·면 단위로 설치하고 소대·분대는 통·리 단위로 설치하되,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.
- ③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비군자원인 보충역의 병을 그 거주지가 아닌 시·군·자치구 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.
- ④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한 감사에서 직장예비군이 최근 5년간 2회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명할 수 있다.

문 28. 예비군법령상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- ① 같은 건물이나 구내(構內)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② 같은 직장 또는 같은 계열의 직장이 같은 도(道) 내에 있는 경우에 직장단위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③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자원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④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중에서 같은 산업단지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

문 29.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편성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방부장관은 전역자의 인사명령서를 전역일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, 병무청장은 이를 다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.
- ② 병무청장에게 인사명령서를 보낼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지만, 공문서의 송수신 체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낼 수 있다.
- ③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.
- ④ 육군참모총장·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이 「병역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,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 중 「예비군법」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시 예비군에 편성해야 한다.

문 30.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수임군부대의 장과 수탁경찰서장은 「민방위기본법」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을 위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.
- ②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③ 동원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보류원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보류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원의 보류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④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동원을 연기할 수 있고, 그 사유가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도 그러하다.

문 31. 예비군법령상 재해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예비군대원이 동원명령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.
- ② 재해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에 관하여는 「군인연금법」을 준용하되,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재해보상금의 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의 계급 및 호봉과 같은 현역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.
- ③ 장애보상금을 받은 예비군대원이 그 상이(傷痍)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.
- ④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·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 그 지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문 32. 예비군법령상 예비군표지장의 제식(制式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예비군제복을 착용하는 때, 베레모의 경우 모표는 그 중앙이 베레모 앞면의 중앙과 일치하게 부착한다.
- ② 견장은 예비군제복 및 점퍼의 상의 어깨선 양측에 월계수 잎이 어깨 부분으로 향하도록 부착한다.
- ③ 흉장은 근무복 상의 명찰 상단 우측에 부착한다.
- ④ 휘장의 지도는 중대장의 경우 금색으로 도금하되, 예비군제복 상의 좌측 호주머니 단추부분에 부착한다.

문 33. 예비군법령상 긴급조치 및 보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(○)과 옳지 않은 것(×)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ㄱ. 무장공비가 마을에 침투하였을 때, 수탁경찰서장은 무장공비를 체포하기 위하여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포에 지장을 주는 주민의 재산을 제거할 수 있다.
- ㄴ. 수탁경찰서장이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, 기간, 구역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.
- ㄷ. 수탁경찰서장이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였을 때, 수탁경찰서장은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조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ㄹ. 재산을 제거하는 긴급조치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.
- ㅁ. 보상심의회는 심의를 거쳐 결정된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,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	ㄱ	ㄴ	ㄷ	ㄹ	ㅁ
①	○	×	○	×	○
②	×	○	×	○	×
③	○	×	×	○	×
④	×	×	○	×	○

문 34. 예비군법령상 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「민방위기본법」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예비군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.
- ② 무장공비가 침투한 지역에서 무장공비의 소멸을 위하여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 예비군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.
- ③ 예비군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장하는 경우, 무장을 위한 무기, 탄약, 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역예비군 부대의 지휘관이 수행한다.
- ④ 예비군의 무기, 탄약, 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「군수품관리법」상 물품출납공무원으로 본다.

문 35. 「예비군법」상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을 모두 고르면? (단,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)

- ㄱ.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6개월이 된 자
 ㄴ.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6개월이 된 자
 ㄷ. 법원의 판결로 자격이 상실된 자
 ㄹ.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상 횡령죄를 범하여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 6개월이 된 자
 ㅁ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6개월이 된 자

- ① ㄱ, ㄴ
- ② ㄴ, ㄹ
- ③ ㄷ, ㅁ
- ④ ㄷ, ㄹ, ㅁ

문 36. 예비군법령상 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- ② 직장방위협의회 위원은 관할구역의 각급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군부대의 장 및 주민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.
- ③ 직장방위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.
- ④ 지역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문 37. 「예비군법」상 벌칙에 정한 법정형의 상한선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?

- ㄱ. 예비군대원이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
- ㄴ. 예비군대원이 동원명령에 따라 소집되어 무장공비와 교전하던 중에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
- ㄷ.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
- ㄹ. 예비군훈련을 보류받으려는 지역예비군대원이 보류원서를 제출한 후, 퇴직으로 보류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

- ① ㄱ - ㄴ - ㄷ - ㄹ
- ② ㄷ - ㄱ - ㄹ - ㄴ
- ③ ㄷ - ㄹ - ㄴ - ㄱ
- ④ ㄹ - ㄱ - ㄷ - ㄴ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시행령 포함)

문 38.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자연재난에 해당한다.
- ② 국민의 생명·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보건복지부이다.
- ③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한 예보·경보는 기상청장이 실시한다.
-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
문 39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업무와 그 권한 행사자의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·조정 — 시·도지사
 ㄴ.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의 편성 — 행정안전부장관
 ㄷ. 시·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의 작성 — 행정안전부장관
 ㄹ.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작성 — 국무총리

- ① ㄱ, ㄴ
 ② ㄱ, ㄷ
 ③ ㄴ, ㄹ
 ④ ㄷ, ㄹ

문 40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다음 사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
 ○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집행계획의 심의
 ○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

- ①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②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다.
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.
 ④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문 43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에서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특정관리대상지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를 명하려면 먼저 정밀안전진단을 명하여야 한다.
-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없이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문 44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자재·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·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해당한다.
-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국무총리가 작성한다.
- ④ 재난관리책임기관·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관리에 관한 응급조치 등 재난 대응의 지시 및 보고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·운영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.

문 45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응급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재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.
- ③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- ④ 시·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「민방위기본법」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을 할 수 있다.

문 48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안전사업지구는 공개 모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안전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·도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.
- ③ 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은 시·도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안전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.
- ④ 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매년 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사업의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문 49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,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고,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재난원인조사 중 예비조사의 경우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단장은 재난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정밀분석을 하도록 하거나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한다.
- ④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은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문 50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관련 보험·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험·공제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가 보험·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② 「도로법 시행령」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에 대한 가입의무자는 해당 지하상가에 대한 허가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험·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재난 관련 보험·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- ④ 보험·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가 보험·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